

1. 폐지이유

기관 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상위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173호

중소벤처기업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28호, 2018.5.14)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중소벤처기업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무원수당 등 운영에 관한 규정</u></p>	<삭 제>
<p><u>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④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하고, 소속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신설 또는 조정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중소기업부(국립공고교원은 제외한다)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u></p> <p><u>제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함에 있어, 조직·정원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u></p> <p><u>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인사업무담당과장(또는 이에 준하는</u></p>	<삭 제>

자)이 간사를 담당하며, 정책기획관(또는 이에 준하는 자)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서의 정원 및 직급 등의 조정
3.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 및 조정
4. 의도적 절감 재원의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예산 등으로 조정 배정
5.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여유재원의 추가 지급
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결 이전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신설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외에 수당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당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은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지급대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